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5일, 강대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4.8.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9.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3차 국방위원회(2024.9.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대식의원)

현행법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병적은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의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역면제 또는 병역처분 변경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류승우)

□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전시근로역·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병역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 이력 등을 조회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병주)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안 등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은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 및 병역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등에게 대상자의 진료과목, 진료일자 등의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